

2000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원자력학회

제6차 NPT 평가회의 결과분석 및 전망

The Results and Prospects of the Sixth NPT Review Conference

이병욱, 오근배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150

요 약

본 논문은 2000년 4월 24일부터 4주간에 걸쳐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6차 NPT 평가회의 최종선언문(final declaration)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국제 원자력 정세를 전망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Final Declaration Adapted at the Sixth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held at UN Headquarters in New York, from 24 April until 19 May 2000 and Prospects International Nuclear Trends.

1. 서론

1980년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원자력기술 자립을 의욕적으로 꾸준히 추구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원자력 발전분야의 기술자립은 달성하였으나, 핵연료주기기술 분야의 기술자립은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따라 원자력 발전이 계속 증대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장기적으로 핵연료주기기술의 자립이 필요하고, 특히 최근의 고유가 행진에 따른 우라늄 자원의 동반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연구개발은 꾸준히 진행하면서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핵연료주기 관련 활동은 핵확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국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NPT의 최근 동향을 파악 분석하고 향후를 전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6차 NPT 평가회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6차 NPT 평가회의의 회의구성 및 당사국의 기조연설을 분석하였고, 제1차(1975년) 및 3차(1985년)회의에 이어 15년만에 채택된 최종선언문(final declaration)¹⁾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향후 핵비확산 정세를 전망하였다.

1) 2000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CONF.2000/28(Vol. 1, Part I and II), 22 May 2000

2. 평가회의 개요²⁾

1995년 무기한으로 연장된 후 처음 개최된 제6차 NPT 평가회의에는 157개 당사국이 참가하였으며³⁾, 옵저버로서 쿠바, 팔레스타인 그리고 UN, IAEA 등 11개 국제기구 및 141개의 비정부기구(NGO)가 참가하였다⁴⁾.

NPT 평가회의는 조약 제8조 3항 및 1995년 평가/연장회의시 결정된 “평가절차 강화”에 따라 전문(preamble) 및 각 조항의 실현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해야할 분야 및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1995년 NPT 무기한 연장시 결정된 “핵비확산 및 핵군축에 관한 원칙 및 목표”에는 CTBT 체결 시한 설정, FMCT의 조기체결 등이 규정되어 있다. 과거의 평가회의와 마찬가지로 6차 회의에서도 핵군축 이행 문제가 비중있게 논의되었으며, 안전조치, 수출통제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도 논의되었다.

이번 평가회의에서 채택한 최종선언문이 국제적 조약이나 협정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정치적 의미를 가짐으로써 이에 포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가. 회의 조직 및 임무

회의는 본회의(Plenary), 3개의 주요위원회(Main Committee), 문안기초위원회(Drafting Committee), 신임장위원회(Credentials Committee), 운영위원회(General Committee)로 구성되었다. 또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2개의 부속기구(subsidiary body)를 제1 및 2 주요 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하였다.

제1 주요 위원회는 핵비확산, 핵군축, 핵비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 등에 관해 논의하였고, 제2 주요 위원회는 IAEA 안전조치,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비핵지대 등에 관한 의제를 토의하였으며, 제3 주요 위원회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 논의하였다.

나. 기초연설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NPT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CTBT 체결 및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CTBT 비준을 환영하였으며, 중국의 핵무기 비선제공격(no-first use) 정책과 러시아의 START II 비준도 환영하였다.⁵⁾ 많은 국가들은 또한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 CTBT 발효지연, 제네바 군축회의(CD)의 교착상태에 따른 FMCT의 미협상 등 최근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NPT 체제가 유지·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각국 대표들은 또한 NPT 보편성 달성, CTBT 조기발효, FMCT의 조속한 협상 개시 등을 촉구하였으며, 비동맹 그룹 및 신의제 연합(NAC: New Agenda Coalition)⁶⁾은 핵보유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핵군축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중국 등은 미국의 NMD 도입 추진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2) 외교통상부, 2000년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참가 결과보고, 2000. 7

3) NPT 당사국은 2000년 9월 현재 187개국이며, 북한은 이번 회의에 불참하였다.

4) 옵저버로서 참가자격이 있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불참하였다.

5) Rebecca Johnson, The 2000 NPT Review Conference: A Delicate, Hard-Won Compromise, July 2000 (<http://www.acronym.org.uk/46npt.htm>)

6) NAC은 브라질, 이집트,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스웨덴 등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최종 선언문 주요 내용

가. 핵무기 비확산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쿠바 등 4개국의 NPT 가입을 촉구하고⁷⁾ 일부 국가의 의무 불이행 사례에 우려를 표명함⁸⁾.
- 인도, 파키스탄에게 핵보유국 또는 여하한 특별지위(special status)를 부여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172호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들 국가가 추가 핵실험 중지선언을 선언하고 CTBT 가입을 공약한 점을 주목함.

나. 안전조치

- 핵무기가 철폐되면 전면 안전조치 협정과 추가 의정서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핵보유국들이 평화적 원자력시설에 대해 자발적 안전조치를 적용할 것을 촉구함.
-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의정서 조치들이 당사국들의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며, 이 조치들이 IAEA 안전조치 체제의 일부분으로서 통합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추가 의정서가 체결되면 두 협정이 하나의 협정으로 해석된다는 IAEA의 GOV/2914 문서를 상기하며, 기존의 안전조치 체제와 강화된 안전조치 체제의 통합을 추진하는 IAEA의 노력을 지지함.
- NPT 비당사국에게는 원자력 또는 원자력관련 분야에서 협력하거나 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선원 및 특수 핵물질 또는 장비는 조약 3조에 따라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비보유국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중사용 품목의 수출이 NPT 비당사국의 핵프로그램에 도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함.
- 수출통제의 투명성 증진이 모든 관심있는 당사국의 대화와 협력의 틀 내에서 계속 추진되기를 권고함.

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당사국의 권리(inalienable right)를 재확인하고, 각 국가의 핵연료주기 정책 등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당사국이 물질, 장비, 정보 등에 관한 교역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원칙으로서 “지속적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 개발을 적용하여 지구환경 보호의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젝트 조성 사업에서 IAEA의 역할을 지지함.
- 방사성 물질의 안전 수송에 관한 IAEA 규정을 승인하며,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관련 규정을 주목하고, 방사성 물질의 수송에 관한 국내 및 국제적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서국가들의 우려에 유의함.
- 방사성 물질 수송국가들이 IAEA의 관련 규정을 자국의 수송규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핵물질 수송 관련정보를 수송에 대해 우려하는 국가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함.
- 방사성 물질 및 사용후 핵연료의 해상 수송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양자간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작업의 추진을 요청함.

7) NPT 가입을 촉구하면서 국가명을 지칭한 것은 처음이다.

8) 북한과 이라크를 지칭한다.

라. 평화적 핵폭발

- 평화적 핵폭발(PNE: Peaceful Nuclear Explosion) 관련 사항은 CTBT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임을 확인함.

마. 핵군축

- NPT 제6조 및 1995년도 P&O 결정 제3항/제4(c)항 이행과 관련하여 체계적, 점진적 노력의 일환으로 아래 실질적 조치(Practical Steps)에 합의함.
 - CTBT의 조기 발효를 위한 조속하고 무조건적인 서명 및 비준
 - CTBT가 발효될 때까지 핵무기 실험 또는 여타 핵폭발의 중지
 - 5년내 FMCT 체결을 위한 CD에서의 협상 개시 및 작업계획 채택을 촉구
 - CD에서의 핵군축에 관한 적절한 보조기구(subsidiary body) 설치 촉구
 - 핵 군비통제 및 감축 조치에 있어 불가역성의 원칙(principle of irreversibility)
 -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핵보유국들의 분명한 약속(unequivocal undertaking)
 -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 및 전략 공격 핵무기 감축을 위한 토대로서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START II의 조기 발효 및 완전한 이행, 그리고 START III의 조기 체결
 - IAEA-미국-러시아간 Trilateral Initiative 체결 및 이행
 - 국제적 안정을 증진하고 모든 국가들의 안전을 저해시키지 않는다는 원칙하에서 핵군축을 위해 모든 핵보유국들이 취해야 할 조치(Steps)
 - . 일방적인 핵무기 감축을 위한 핵보유국들의 노력 강화
 - . 핵무기 능력, NPT 제6조에 따른 핵군축 이행, 자발적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투명성 증대
 - . 일방적 조치를 토대로 핵무기 감축 및 군축과정의 일환으로서 전술핵무기 추가 감축
 - . 핵무기 체제의 작동 수준(operational status) 감소를 위한 구체적 조치
 - . 핵무기 사용 위험을 최소화하고, 핵무기 전면 철폐를 촉진시키기 위해 안보정책에 있어서 핵무기의 역할 감소
 - . 모든 핵보유국들이 적절한 시기에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과정에 참여

바. 비핵지대 및 안전보장

- 1995년 유엔 안보리 결의(984호)에 대한 핵보유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1998년 3월 CD에서의 특위 설치를 주목함.
- 비핵지대 설치 및 부속의정서 서명을 통해 핵비보유 당사국에 대한 NSA 보장 확대가 중요함을 인식함.

사. 지역문제

- 1995년 NPT 평가 및 연장회의에서 채택된 중동 결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중동 평화과정(Middle East Peace Process)의 목표를 재확인하며, 이러한 노력이 중동에서의 핵무기 및 여타 대량 파괴무기 금지 지역 설치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이스라엘의 NPT 가입 및 모든 핵시설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적용을 촉구함.
- 1998년 12월 IAEA 사찰이 중지된 이래 IAEA가 이라크의 유엔 안보리 결의(687호)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을 주목하고, IAEA-이라크간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IAEA 사찰이 2000년 1월 실시되었음을 주목하며, 이라크가 IAEA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함.

- 인도, 파키스탄 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1172호)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양국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지지 못함.
- 인도, 파키스탄이 핵비보유국으로서 NPT에 가입하고, 모든 핵시설을 전면 안전조치 하에 둘 것을 촉구하며, 핵무기 관련 기술, 물질, 장비에 관한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함.

4. 회의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회의 평가

2000년 NPT 평가회의는 회의 개최 전의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들 즉, 1998년 5월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제 개발, CTBT 발효 지연 및 FMCT 미협상 등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언문에 합의하였다. 특히 최종 선언문을 통하여 핵보유국들의 분명한 핵군축 약속을 명시하였고,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서 합의하는 등 핵군축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 졌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비록 핵군축에 관한 각 분야별 문제들 즉, 해체 핵무기의 불가역성, 일방적 핵군축 노력, 안보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 감소, 핵무기의 작동수준(operational status) 감소, 분명한 핵군축 공약, 전술 핵무기 감축, 핵무기 능력의 투명성 증대 등에 대한 최종 선언문의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희석되거나 일반적으로 표현되고, 이러한 약속의 구체적 일정이나 이행 수단 등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으나 그간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 온 5개 핵보유국들이 핵무기의 전면 철폐를 위한 분명한 약속을 하였다는 것은 NPT 발효이래 최대의 성과로 평가된다.

둘째,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한 합의다. 앞에 기술한 최종 선언문의 주요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CTBT 조기발효, 5년 내에 FMCT 체결, IAEA 안전조치 강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핵물질의 안전수송,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 손해배상 제도의 강화 등 NPT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합의하였다. 따라서 NPT 발효후 이렇다할 진전이 없던 핵군축 분야에서 1995년의 “핵비확산에 관한 원칙 및 목표”⁹⁾에 이어 구체적 추진분야를 설정하여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향후 논의 전망

핵군축 분야의 구체적 조치를 포함한 최종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하여 해당 분야의 각 조치들이 추진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체제, 전술핵무기 감축, 안보전략에서의 핵무기 역할 감소, 핵무기 투명성 증진 등 주요 쟁점이 되었던 항목들을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국들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채 일반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관련 주제의 이행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NMD 구축에 반대하고 있고, CD에서의 의제선정과 관련, 외기권의 무기화 방지에 관한 협상을 FMCT 보다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선언문의 조치들이 순

9) 외무부, 1995년 핵무기비확산조약 평가 및 연장회의 참가 결과보고, 1995. 9

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평가회의와는 달리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쿠바 등 4개 국가를 최종선언문에 명기하면서 NPT 가입을 촉구하였으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NPT 가입 압력은 강화될 것이다. 또한 핵비보유국들에 대한 비확산 통제도 강화될 것이며, 특히 북한 및 이라크에 대한 안전조치 협정 이행 및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압력도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서방 그룹은 수출통제 체제가 핵확산 방지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쟁거위원회의 실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비동맹 그룹은 동 체제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NPT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체제로 유지되어야 하고, 수출통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최종선언문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원자력 수출통제 그룹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쟁거위원회나 NSG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비동맹 그룹의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까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관한 한 당사국간에 이견이 없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원자력이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당사국간 이견이 있었다. 즉,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축소해 나가고 있는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원자력 발전이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자력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은 반대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될 전망이다. 따라서 자원 빈국으로서 원자력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Pu 수송 route에 인접하고 있는 국가들의 Pu 해상수송에 대한 반대는 과거의 평가회의 때보다도 더욱 심해졌으며, 해상수송 규정이나 손해배상제도의 배상한도 확대 등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에너지 및 모든 핵연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핵물질의 안전한 수송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수송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후 기

본 논문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관고유사업 “원자력 대외정책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이다.

참고문헌

2000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CONF.2000/28(Vol. 1, Part I and II), 22 May 2000

외교통상부, 2000년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참가 결과보고, 2000. 7

Rebecca Johnson, The 2000 NPT Review Conference: A Delicate, Hard-Won Compromise, July 2000 (<http://www.acronym.org.uk/46npt.htm>)

외무부, 1995년 핵무기비확산조약 평가 및 연장회의 참가 결과보고, 1995. 9